

『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아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상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(안 제5조)
 - 현행 : 폐질 등급 ⇒ 개정 : 장애등급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‘폐질’, ‘불구’, ‘정신박약’, ‘정신병자’ 등의 용어는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로서 지난 2010. 1. 1일 대통령령 제24890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한글정비 순화계획에 따라 ‘폐질’을 ‘장애’로 수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장애인을 모욕하는 비하 표현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